

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
공고합니다.

2023년 6월 16일

국토교통부 장관

1.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

대상지역			면적(km ²)	비 고
합 계			22.09	
경기도	평택시	모곡동	0.57	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지역
		세교동	1.00	
		지제동	2.37	
		신대동	2.67	
		장당동	0.21	
		고덕면 궁리, 동고리, 방축리, 여염리	7.78	
경상남도	진주시	문산읍 옥산리, 삼곡리, 소문리	7.37	
		호탄동	0.12	

2. 허가구역 지정기간 : 2023년 6월 21일부터 2026년 6월 20일까지

3.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

용 도 지 역		면 적
도시지역	주거지역	60㎡ 초과
	상업지역	150㎡ 초과
	공업지역	150㎡ 초과
	녹지지역	100㎡ 초과
	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	60㎡ 초과
도시지역 외의 지역	농 지	500㎡ 초과
	임 야	1,000㎡ 초과
	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	250㎡ 초과

4.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: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www.molit.go.kr)에서 확인*

* 뉴스·소식-공지사항-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

※ 국토부 홈페이지 공고로 별도 첨부한 토지조서는 공고일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,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토지이동 및 등록사항정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, 허가구역 대상여부는 지정도면(구역 설정)을 기준으로 함

5.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: 붙임1

※ 토지e음(<http://www.eum.go.kr>)에서 세부정보 확인 가능

[붙임 1]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면

〈 경기도 평택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〉

